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306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2

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추경호의원안, 박정현의원안) ····· 2

Ⅰ. 개요

1.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30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추경호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8. 22.

(3) 회 부 일 : 2025. 8.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이 일정한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의료관광 유치 지원 등을 위하여 계속하여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추경호의원안, 박정현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제107조의3제1항)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관광객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2026년 12월 31일(추경호의원안) - 2028년 12월 31일(박정현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 공포한 날(박정현의원안) - 2026년 1월 1일(추경호의원안)

* 추경호의원안 2025. 8. 22. 발의(의안번호 12306), 박정현의원안 2025. 10. 2. 발의(의안번호 13460)

□ 2건의 개정안은 외국인관광객이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 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추경호의원안은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박정현의원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하려는 것임.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제

도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 4월에 처음 시행된 것으로, 규정 신설 당시에는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적용기한을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하였고, 이후 적용기한이 6차례 연장되어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동 특례제도를 적용받는 외국인관광객은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1]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하며,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국제연합군·미국군의 장병 등은 제외되고 있음.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쌍꺼풀 수술, 코성형수술 등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으로 한정되며[2], 외국인관

---

1)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② 법 제10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07조의3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2.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특례적용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광객이 직접 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를 통하여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음.

□ 동 제도의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14만 1,776건에 대하여 192억원의 부가가치세액이 환급되었고, 코로나19 이후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4년에는 101만 2,935건에 대하여 955억원의 세액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024년 환급건수는 전년 대비 약 2.5배, 환급액은 2.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

(단위: 건,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환급 건수	33,659	50,338	76,335	141,776	26,899	3,015	47,032	408,242	1,012,935
환급액	79	104	138	192	38	8	114	417	955

자료: 기획재정부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첫째, 동 특례제도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유치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환

자가 국내에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불법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수술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의료사고나 수술 부작용에 대한 배상 및 사후관리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외국인 환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한국 의료관광의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외국인환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스스로 합법적인 유치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불법의료관광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둘째,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은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환자 수는 2024년 기준 124만명으로 전년 대비 68만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외국인 환자 유입으로 의료관광 유치 등의 효과가 있어 의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진료과별 외국인 환자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내과 통합	79,091 (21.3)	85,075 (20.0)	80,507 (20.2)	89,975 (19.4)	113,442 (19.2)	29,094 (21.6)	47,930 (26.4)	65,424 (22.3)	90,955 (13.4)	124,085 (10.0)
검진 센터	34,284 (9.3)	39,743 (9.3)	39,156 (9.8)	41,230 (8.9)	54,185 (9.2)	4,848 (3.6)	18,369 (10.1)	19,260 (6.6)	50,385 (7.4)	55,762 (4.5)
성형 외과	41,263 (11.1)	47,881 (11.3)	48,849 (12.3)	66,969 (14.4)	90,494 (15.3)	16,585 (12.3)	16,678 (9.2)	46,314 (15.8)	114,074 (16.8)	141,845 (11.4)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피부과	31,900 (8.6)	47,340 (11.1)	43,327 (10.9)	63,671 (13.7)	85,194 (14.4)	15,409 (11.4)	11,979 (6.6)	36,060 (12.3)	239,060 (35.2)	705,044 (56.6)
정형 외과	22,468 (6.1)	24,121 (5.7)	22,730 (5.7)	23,864 (5.1)	26,068 (4.4)	7,582 (5.6)	8,994 (5.0)	11,434 (3.9)	15,583 (2.3)	17,031 (1.4)
산부 인과	18,986 (5.1)	23,081 (5.4)	20,145 (5.1)	24,472 (5.3)	41,007 (6.9)	8,509 (6.3)	8,964 (4.9)	10,026 (3.4)	14,192 (2.1)	16,387 (1.3)
일반 외과	13,415 (3.6)	13,595 (3.2)	11,238 (2.8)	12,810 (2.8)	15,087 (2.6)	5,241 (3.9)	7,301 (4.0)	9,291 (3.2)	14,154 (2.1)	15,732 (1.3)
안과	11,230 (3.0)	12,335 (2.9)	11,402 (2.9)	10,938 (2.4)	13,149 (2.2)	4,312 (3.2)	6,692 (3.7)	8,414 (2.9)	13,591 (2.0)	15,887 (1.3)
치과	11,309 (3.1)	12,984 (3.1)	13,307 (3.3)	12,483 (2.7)	15,398 (2.6)	3,976 (3.0)	5,749 (3.2)	10,121 (3.5)	15,812 (2.3)	18,313 (1.5)
신경 외과	11,013 (3.0)	12,513 (2.9)	13,068 (3.3)	14,052 (3.0)	15,476 (2.6)	3,695 (2.7)	4,590 (2.5)	6,045 (2.1)	8,234 (1.2)	8,606 (0.7)
한방 통합	13,218 (3.6)	18,011 (4.2)	20,343 (5.1)	22,063 (4.8)	23,723 (3.9)	2,204 (1.6)	2,587 (1.4)	4,462 (1.5)	18,356 (2.7)	33,893 (2.7)
기타	82,316 (22.2)	88,701 (20.9)	73,810 (18.6).	81,925 (17.6)	97,643 (16.5)	33,207 (24.7)	41,648 (22.9)	66,499 (22.7)	84.403 (12.4)	92,184 (7.4)
합 계	370,493 (100.0)	425,380 (100.0)	397,882 (100.0)	464,452 (100.0)	590,866 (100)	134,662 (100.0)	181,481 (100.0)	293,350 (100.0)	678,799 (100.0)	1,244,769 (100.0)

주: 진료과별 실환자 기준(1명의 환자가 복수의 진료과를 방문한 경우, 방문한 진료과별로 1명으로 표기)
자료: 보건복지부

이로 인해 외국인환자 및 동반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의료비 지출 외에 숙박, 음식, 관광, 쇼핑 등 국내 내수 소비의 낙수효과 발생 및 외국인환자 만족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재방문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외국인관광객에게만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과의 과세형평성에 어긋난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현행 「부가가치세법」[3]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 따라 미용성형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임.

둘째, 동 환급 특례에 따른 2024년도 감면세액은 778억원이고, 2025년에는 2,177억원, 2026년에는 2,246억원으로 전망되어 조세지출의 규모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세수 감소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망)	2026 (전망)
미용성형 의료용역	6	25	296	778	2,177	2,246

자료: 각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를 종료할 필요가 있으며, 특례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여 제도를 종료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 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해외여행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과세원칙에 맞지 않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는 측면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운영해오던 특례제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4)]

문 의 처
02)6788-5147

4)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환급 특례 제도의 도입·운영 목적이 상당 수준 달성되었으므로, 조세특례 제도의 운영원칙에 따라 동 제도의 일몰 종료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제도 일몰 종료 이후 의료기관들의 자발적인 가격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평가하였음.